

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

조례안

(대표발의: 차 해 영 의원)

의안 번호	22-129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2. 11.

발의자: 차해영, 고병준, 권인순, 권영숙,
김승수, 남해석, 이상원, 이한동,
장정희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,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할 필요성이
나날이 증대되는 시기에,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피해자를 보호·지원
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
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
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나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4조)

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

다. 협력체계의 구축 등(안 제5조)

피해지원 관련 시설, 법률 및 수사기관,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

라.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
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스토킹방지, 피해지원,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

3. 관계법령

가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2. 11. 18 . ~ 11. 23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22-129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 신고체계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·운영
3. 스토킹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,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법률, 주거,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5.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「서울

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의 구축 등)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, 법률 및 수사기관,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스토킹방지, 피해지원,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83호, 2021. 4. 20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12.11. 8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

보호·지원 조례」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안심장비 지원사업 예산 현황(전액 시비)
 - 2021년 10,000천원, 2022년 32,000천원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조현욱
연 락 처	02-3153-8924